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쟁점 및 개선 연구

이 희 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국 문 초 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하 “이 법 규정”으로 줄임)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남용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바, 약 10년 전에 비해서 이 법 규정에 따른 수사기관 등의 요청 건수는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에는 이러한 수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건대, 이 법 규정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밀행성’ 및 ‘효율성’을 보장해 주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해 준다. 따라서 이 법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는 정당하다. 그리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측에서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그 어떤 법적인 강제나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독일처럼 우리나라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과 달리,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 없는 이 법 규정을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의 목적에 대해 우리나라와 독일의 헌법재판소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이 법 규정에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새롭게 받도록 개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법 규정은

* h20412@naver.com

그 수집 정보의 대상이 다소 광범위하고 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수사기관 등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법 규정은 그 수집 정보의 범위 중에서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여러 중요한 개인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상세한 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어서, 해당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해 수사기관 등이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 법 규정에서 해당 통신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간단한 주소(도시명 또는 동네명 정도),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 정도만 제공토록 개선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좀 더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임의 수사, 법원의 허가나 영장,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과잉 금지의 원칙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연혁과
실태 및 시사점
 - 1. 연혁
 - 2. 실태
 - 3. 시사점
-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필요성 여부 검토
 - 1. 주요 내용
 - 2.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필요성 여부 검토
- IV.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 및 검토
 - 1. 독일의 입법례
 - 2.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
 - 3. 검토
- V.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여러
쟁점과 개선 방향
- VI. 맺는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2024년 8월 26일에 MBC 뉴스에서는 “검찰이 이른바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24년 1월에 SK텔레콤과 KT, LG U+ 등의 국내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서 가입 고객 3,176명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 등의 여러 민감한 개인정보들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의 당사자 대부분에게 해당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후에야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의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다(이혜리, 2024).

이렇게 2024년 1월부터 지난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검사,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하에서 “수사기관 등”으로 줄임)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개인의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사후에 반드시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게 된 개인(이하에서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으로 줄임)에게 통지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 이용자 정보 취득 행위 위헌 확인 등(여러 국가기관들에 의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22년 7월 21일에 2016헌마388·2022헌마105·2022헌마110·2022헌마126(병합) 결정(이하에서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388 등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줄임)에서 수사기관 등에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에게 사후 통지 제도가 없다는 점에 의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2023년 12월 29일에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에게 사후 통지 제도가 신설되었고, 실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2024년 8월 8일에 동아일보는 최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기관 등에서는 정보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시, 해당 여러 정보의 사용 목적을 단순히 ‘수사’ 등으로 매우 간략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사실을 사후에 통지받게 된 개인들은 해당 개인 본인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이 신속하고 기밀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할 때마다 일일이 법원에 허가나 영장을 청구하면 춘각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보도하였다(김준일·안규영·구민기·권구용, 2024).

이하에서는 먼저 위와 같이 최근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크게 쟁점화 된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를 뜻하는 ‘미디어(네이버 국어사전, 2024)’의 범위에 속하는 ‘통신’ 분야 중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제83조 제3항부터 제6항 및 동법 제83조의2에서 수사기관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규정’(이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으로 줄임)의 연혁 및 실태 또는 현황 및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다(이하 II).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상 주요 내용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처럼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필요설’과 ‘불필요설’을 각각 살펴본 후에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이하 III).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과 별도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여러 판례의 주요 판시 내용 및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시 내용들을 고찰한 후에, 이에 대한 각각의 시사점을 검토한다(이하 IV).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상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¹⁾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 등의 여러 쟁점 및 향후 이에 대한 여러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이하 V). 끝으로 결론인 맺는말 부분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각각 요약·정리하여 제시한다(이하 VI).

1)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II.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연혁과 실태 및 시사점

1. 연혁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아홉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983년 12월 30일에 법률 제3686호로 제정된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제2항에서 최초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1991년 8월 10일에 법률 제4394호로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법의 명칭 자체도 오늘날과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때 당시의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법원의 허가 영장이 필요한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각각 구분 내지 구별하지 않았고,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를 수사상의 필요에 의한 제공 요청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해당 요청 주체 부분에 기존의 ‘검사와 수사 관서의 장’ 이외에도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해당 요청 사유 부분에서 ‘수사’ 이외에도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해당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여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명확하게 구분 내지 구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4항에서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과 필요한 자

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해당 서류 대장과 관련 자료들의 비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동법 동조 제6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의무와 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권한에 관해서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동조 제7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자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의무를 명시하도록 각각 개정하였다.

넷째, 2002년 12월 26일에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 해당 요청 주체 부분에 ‘법원’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해당 요청 사유 부분에 ‘재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IT 과학기술 시대에 접어들어 개인의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 증가에 따라 해당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 부분에 ‘전화번호’ 및 ‘아이디’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다섯째, 2007년 1월 3일에 법률 제8198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서 해당 요청 주체 부분에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해당 요청 사유 부분에 ‘조세범처벌법 중 일부 범죄 사건의 조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여섯째, 2008년 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0666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통신 자료 제공 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의 보관 기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현행 2024년 7월 30일에 대통령령 제34761호로 일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에 따른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계속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2010년 3월 22일에 법률 제10166호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이하에서 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죄 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 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동법 동조 제4항에서는 이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은 요청 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에서 “자료제공요청서”로 줄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서세인, 2023).

여덟째, 2022년 7월 21일에 헌법재판소는 2010년 3월 22일에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에서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전혀 (일체) 마련해 두지 않고 있어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²⁾

아홉째, 이 법 규정에 대하여,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3년 12월 29일에 법률 제19856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다소 사소한 문구 수정이 이루어졌고, 동법 제83조의2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새롭게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388 등

2)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에게 통지해주는 여러 절차적 규정을 신설하였다(이희훈, 2024, 8월).

2. 실태

최근 2024년 8월 13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에서 “과기부”로 줄임)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전기통신법상 수사기관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건수는 매년 조금씩 다행스럽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 2023년에 과기부에서 집계한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여러 수사기관 등이 여러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총 463만 1,310건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보다 10년 전인 2014년에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총 1,296만 7,456건에 비하여 약 64.2%가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검찰이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는 2014년에 총 426만 7,625건에서 2023년에는 총 147만 9,392건으로 약 65.3%가 대폭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이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지난 2021년에는 총 135만 5,739건 및 2022년에는 총 130만 5,620건에 비해서 2023년에는 총 147만 9,392건으로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웅, 2024).

한편, 2024년 1월 19일에 총 102개의 전기통신사업자(기간 통신 67개사 및 부가 통신 35개사)가 과기부에 제출하여 과기부에서 집계한 “2023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총 295,741건(2022년

하반기: 총 2,122,927건 → 2023년 상반기: 총 2,418,668건)으로 증가하였고, 문서 수를 기준으로 총 88,244건(2022년 하반기: 482,566건 → 2023년 상반기: 총 570,810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 중에서,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해서는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 2023년 상반기에 검찰이 총 179,716건(2022년 하반기: 총 559,874건 → 2023년 상반기: 총 739,590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총 100,985건(2022년 하반기: 총 1,497,728건 → 2023년 상반기: 총 1,598,713건)으로 증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총 5,080건(2022년 하반기: 총 5,483건 → 2023년 상반기: 총 10,563건)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는 총 1,642건(2022년 하반기: 총 23건 → 2023년 상반기: 총 1,665건)으로 증가하였고, 국세청 등 기타 국가기관들은 총 8,318건(2022년 하반기: 총 59,819건 → 2023년 상반기: 총 68,13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이희훈, 2024, 8월).

3. 시사점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연혁을 크게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 피싱 범죄나 납치 범죄 등의 각종 범죄의 피해자나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 신속한 확인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은밀한 범죄 수사와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와 각종 피해 구제 등의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본 규정의 입법 목적의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이 법 규정이 헌법상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권영성, 2009; 김철수, 2013; 성낙인, 2022; 이희훈, 2017; 전광석, 2023; 한수웅, 2022, 허영, 2015)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개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과거에 맨 처음에 입법화된 1983년 12월 30일에 법률 제3686호로 제정된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 제2항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간에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의 정도가 다른 것에 대하여, 상호 간에 각각 구분 내지 구별해서 제한 또는 통제하지 않았었던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을 전격으로 개정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과 이보다 양적·질적으로 훨씬 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간에 본 논문의 III-1번처럼 각각 구분 내지 구별해서, 해당 통신 이용자에 대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을 좀 더 낮추어 주거나 줄여 주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개선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둘째,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4항을 개정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와의 연관성과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동법 동조 제5항에서 이에 대한 서류 대장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비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동법 동조 제6항에서 과거 정보통신부장관(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현황 보고 의무와 과거 정보통신부장관(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점검 권한을 개정하였다. 이밖에 2008년 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0666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5항에 따른 통신 자료 제공 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한 자료의 보관 기간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

한 자료의 보관 기간 규정에 따라 기존보다 좀 더 해당 통신 이용자에 대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가능성을 제고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개선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셋째, 최근 2022년 7월 21일에 헌법재판소의 2016헌마388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 등에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 개인에게 ‘사후 통지 제도’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2023년 12월 29일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게 된 개인에게 ‘사후 통지 제도’가 신설되어, 실제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과거에 비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더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바람직하게 개선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실태나 현황에 비추어, 과거 10년 전과 비교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2023년에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아 확인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법 규정에 따른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가능성이 꽤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다만, 최근 3년간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비해서는 2023년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여러 수사기관 등이 통신사들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에 대한 해당 수치가 다소 증가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통신 이용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은 조금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전화번호 수를 기준으로 할 때, 2022년 하반기에 비해서 2023년 상반기에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타 국가기관 등이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의 건수

가 약간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통신 이용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른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좀 더 낮추거나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희훈, 2024, 8월).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주요 내용 및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필요성 여부 검토

1. 주요 내용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동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양자 간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와 종료 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적용 대상이나 적용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양자 간의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의 존부(存否)’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측의 해당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 의무나 강제성이 없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 대해서는 동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나 강제성이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요청 규정에 대한 협조의무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요청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측의 해당 자료 제공에 대한 협조 의무나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양자 간의 ‘법원의 허가 존부(存否)’에 큰 차이가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의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그 제공을 요청할 때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 없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13조 제3항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요청 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서는 절차적으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한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5항에 따른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대장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따라, ‘1년’이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 2 제2항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동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 동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12개월. 다만, 시외·시내전화 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동법 제2조 제11호 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으로 각각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요청 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측의 해당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필요성 여부 검토

가.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필요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여 수사기관 등이 해당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을 하는 것은 비록 형식상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지만, 수사기관 등이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경우에 이러한 요청만으로도 전기통신사업자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 등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방식으로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통신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굳이 자신의 부담하에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의 취득은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처분’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나 영장 없이 압수나 수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위반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동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오기두, 2014; 오동석, 2020; 임규철, 2013).³⁾

3) 同旨: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에서 1.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에 대한 별개 의견.

나. 법원의 허가나 영장의 불필요설

수사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주의를 새롭게 도입할 때는 급박한 범죄의 초기수사를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는 주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의 일종인 ‘사실 조회’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현재처럼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박민우, 2013; 박찬걸·강동욱, 2014).⁴⁾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3년의 법원의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현황과 제공요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률은 겨우 4~6%밖에 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법원의 허가나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효율적이고 엄격한 제한이나 통제하는 역할이나 기능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향후에도 현재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현재처럼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권양섭, 2015).

다. 검토

향후에도 현재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

4) 同旨: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사유들에 의해서,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장 등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여 어떠한 형태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통신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 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어떠한 법적 의무도 명확하게 부과하거나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 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자료의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향후에도 현재처럼 계속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

둘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하면 “수사에 관해서는 공무소 기타 공사(公私)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임의수사의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해당 공사단체나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적절히 보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했지만, 전기통신사업자 등 상대방 측이 만약 이러한 자료의 제공 요청을 거부한다면 해당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

5)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법원으로부터 압수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필요한 해당 수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강제수사의 남용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도록 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향후에도 현재처럼 계속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서,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통신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준다. 이에, 먼저 해당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의하여, 그 입법의 목적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수사기관 등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자료 제공요청을 통해서,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 부합한다.⁶⁾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분명히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본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 의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통신의 자유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6)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따라서 이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지 않더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 중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상 ‘임의수사’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이 요청한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분명히 거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 규정으로 보호하려는 해당 범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등의 공공의 안녕질서라는 공익은 이 법 규정으로부터 침해될 수 있는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통신의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지 않더라도 과잉 금지의 원칙 중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넷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3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을 전격으로 개정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과 이보다 양적·질적으로 훨씬 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높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간에 각각 구분 내지 구별해서, 해당 통신 이용자에 대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의 문제점을 좀 더 적절하게 제한 또는 통제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개정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적법절차의 원칙’이나 ‘영장주의의 원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향후에도 현재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이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대한 독일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 및 검토

1. 독일의 입법례

독일은 미국과 프랑스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에 해당하는, 이른바 ‘가입자 기본정보(Bestandsdaten)’와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이른바 ‘교신 정보(Verkehrsdaten)’를 각각 구분하고 있다.

즉, 독일의 ‘전기통신법(2023)’ 제112조에 의하면, ‘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해서 소위 ‘자동적 정보제공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12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①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 번호와 기타 접속 부호, ② 통신단말기 소유자의 이름, ③ 통신단말기 소유자의 주소, ④ 자연인의 경우에 생년월일, ⑤ 유선 통신망의 경우에 단말기의 주소, ⑥ 무선 통신의 경우에 단말기의 번호, 계약 시점에 이러한 여섯 개의 정보를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의무적으로 저장해야 하고, 독일의 ‘연방 네트워크 청(Bundesnetzagentur)’은 언제나 이러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에 이러한 여러 정보를 이들 국가기관에 전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의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은 독일의 ‘연방 네트워크 청’을 통해서 해당 필요한 개인의 여러 통신 관련 정보들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세인, 2023).

여기서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란, 통신서비스에 대한 통신 계약의 성립, 내용, 변경 또는 종료 등을 위해서 수집되는 특정 가입자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통신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자 메일주소, 은행 계좌번호, 해당 통신 접속 번호나 유선 전화번호, 휴대전화 등의

비밀번호 및 PIN 번호 등’을 뜻한다. 다만, 이러한 독일의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는 통신사실 자료(Verkehrsdaten)나 통신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박민우, 2016).

2. 우리나라와 독일의 판례

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년 1월 1일에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고, 2010년 3월 22일에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중 ‘수사 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이하에서 “첫 번째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줄임)에 대한 2010헌마439 결정에서 “첫 번째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 관서의 장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 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는 그 어떠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⁷⁾

그리고 최근 이와 동일한 취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 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⁷⁾ 헌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이하에서 “두 번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줄임)에 대한 2016헌마388 등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이동전화나 인터넷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사기관 등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범죄 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요청을 통해서 해당 이용자의 통신 정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다.⁸⁾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위의 IV-2-가. 번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유사한 취지로 “독일의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 의한 ‘자동적 정보제공절차’ 규정에 따라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위협 방지와 형사소추 등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므로 정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동 규정 자체를 합헌으로 보았다.⁹⁾

3. 검토

위의 IV-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신속하고 밀행적인 수사 등을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과 같은 목적이나 취지의 독일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한 ‘자동적

8)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9) BVerfGE 130, 151.

정보제공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개념을 각각 별도로 구분해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해당 통신 이용자의 정보 제공 자료의 양적·질적인 차이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받도록 각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즉, 독일처럼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의 경우에 수사기관 등이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을 필요 없이, 수사 등에 대한 신속성과 은밀성을 높여주는 ‘임의수사’의 형태로, 각종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 또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통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신속히 효율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독일의 입법례보다 바람직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독일은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해서 소위 ‘자동적 정보제공절차’ 규정에서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대상들보다 좀 더 많은 종류의 여러 개인 정보들을 그 제공 요청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에서 독일보다는 상대적으로 해당 통신 이용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한층 낮추어 주거나 줄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하여 해당 개인에게 사후 통지 조항이 없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러한 사후 통지 제도를 신설하여, 독일보다 좀 더 충실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보호하고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은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해서 소위 ‘자동적 정보제공절차’ 규정에서 해당 통신 서비스 가입자 개인의 ‘생년월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생년월일과 성별 및 출생지와 출생지에서 당일 같은 성씨의 신고 순서’라는 여러 내밀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많은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른바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만능키’라고 불리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권건보, 2004; 김일환, 2005; 이희훈, 2007) 및 독일은 ‘신분증 및 전자신원증명에 관한 법’에서 도시 이름이나 동네 이름 정도만의 ‘간단한 주소’를 표기해서 여러 법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몇 동 몇 호까지 세세하게 ‘상세한 주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희훈, 2012)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통신 이용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이 독일보다 비교적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희훈, 2024).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규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독일처럼 ‘생년월일’ 정도만을 제공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법 규정에서 몇 동 몇 호까지의 ‘상세한 주소’를 대신해서 독일처럼 ‘도시 이름’ 또는 ‘동네 이름’ 정도의 ‘간단한 주소’ 정도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각각 신속히 개선하여, 현재보다 한층 해당 통신 이용자의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강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시사해 준다.

이밖에 위의 IV-2번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헌법재판소 판례 및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의 공통적인 주요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므로, 본 규정 자체를 폐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의 여러 쟁점과 개선 방향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쟁점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쟁점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고, 범인을 특정하며,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수사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수사의 초기 단계는 그 전 단계인 내사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사실상 수사기관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의 ‘수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 정보의 수집은 그 포섭되는 영역이 더욱 광범위하다. 이렇듯 수사기관 등의 개인 정보의 수집은 문언 그대로 개인 정보를 모으는 것으로 그 시작과 끝나는 기간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수사기관 등이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형의 집행은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문에서 형 집행을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정보 대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서 형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는 형의 확정 이후에 피고인이 도주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는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다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 등이 남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박희영, 2009).¹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법관에 의한 영장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임의 수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예를 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법정형 등을 기준으로 중한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경우(사안의 중대성)이거나 또는 범죄의 예방이나 추가로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긴급성)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형의 집행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국한하여, 수사기관 등이 재판이나 수사 등에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해당 여러 국가기관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전기통신법상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세인, 2023; 이호중, 2019).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취득하는 통신 이용자 정보는 다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개인 식별자의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하여 민감한 정보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정보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 이용자 정보 중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도’는 그 자체로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다른 통신 메타데이터와 결합하거나 분석될 때는 사적 통신의 내용에 의하여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한 개인의 행동, 사회적 관계, 개인의 취향과 정치성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10) 현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별개 의견.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수 있다. 특히 통신 이용자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일종의 ‘만능키’로 불릴 정도로 다른 민감한 개인 정보들로 연결해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해당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서세인, 2023).¹¹⁾

그리고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이 살고 있는 몇 번지나 몇 동 몇 호 정도의 상세한 주소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스토킹 범죄나 기타 협박·폭행이나 살인 등의 보복 범죄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해 주어 특히 해당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주로 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집 대상인 해당 통신 이용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세한 주소’는 향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 이용자 정보 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간단한 주소(도시명이나 동네명 정도),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이나 해지일’ 정도의 통신 이용자 정보만을 제공받아도 충분히 그 입법 목적이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향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그 제공 요청 대상의 범위를 ‘성명, 생년월일, 간단한 주소(도시명이나 동네명 정도),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이나 해지일’을 요청하는 것으로 신속히 개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에 의한 해당 통신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를 좀 더 낮추어 주거나 줄여 주어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법익 균형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현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별개 의견.

VI. 맺는말

이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한 정치인, 언론인, 기타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약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한 건수가 약 64.2%가 대폭 감소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남용 가능성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동안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을 한 수치가 조금 증가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다.

생각건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주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 초기 단계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은 수사기관 등에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여 해당 통신 이용자의 정보 자료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¹²⁾ 수사기관 등의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의 신속성과 밀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¹³⁾

이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은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해당 자료의 제공 요청 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처럼, 별도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기통신법상 ‘가입자 기본정보’에 대해서 소위 ‘자동적 정보제공절차’ 규정을 합헌으로 판시하였다. 즉, 독일은 우리나라처럼 수

12) 현재 2012. 8. 23. 선고 2010헌마439 결정.

13) 현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사 등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성 및 은밀성을 추구하여 ‘임의수사’의 형태로, 각종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 또는 피해자의 보호 등을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의 보호를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에서 모든 사건이나 사안들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나 영장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향후에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처럼, 수사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없게 하고, 각 사건이나 사안별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당 대상 범죄와 해당 대상자 등을 좀 더 특정해서 해당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당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권양섭, 2015).

끝으로, 향후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 규정’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 중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 통신 이용자의 정보 제공 사항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상세한 주소’를 신속히 삭제한 후에, 해당 통신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간단한 주소(도시명 또는 동네명 정도),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 정도만 요청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문헌

1. 단행본

- 권영성 (2009),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철수 (2013),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성낙인 (2022), <헌법학>, 서울: 법문사.
 전광석 (2023), <한국헌법론>, 서울: 집현재.
 한수웅 (2022), <헌법학>, 서울: 법문사.
 허영 (2015),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 논문

- 권건보 (2004),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익과 인권>, 1권 2호, 23-43.
 권양섭 (2015), 범죄수사에 있어서 통신자료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59집, 397-415.
 김일환 (2005),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고찰, <헌법학연구>, 11권 3호, 303-336.
 박민우 (201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의 법적 성격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 -영장주의 및 사후통지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법조>, 65권 7호, 117-170.
 박희영 (2009),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경찰학연구>, 9권 3호, 33-61.
 박찬걸·강동욱 (201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14집 1호, 9-41.
 서세인 (2023),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0집 1호, 27-54.
 오기두 (2014),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보호책임, <사법논집>, 59집, 1-98.
 오동석 (2020),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헌법적 검토, <경찰법연구>, 18권 1호, 119-142.

- 이인용 (20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13.
- 이호중 (201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찰법연구>, 17권 1호, 35-64.
- 이희훈 (2007),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7집 1호, 373-393.
- _____ (2012), 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정부 제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집 3호, 1-36.
- _____ (2017),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입법학연구>, 14집 1호, 123-143.
- _____ (2024), 우리나라 실물 주민등록증 제도의 개선 연구, <명지법학>, 23집 1호, 239-260.
- 임규철 (2013), 전기통신사업자의 수사기관으로의 통신정보 제공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 <헌법학연구>, 19권 3호, 265-291.

3. 기타 자료

- 김준일·안규영·구민기·권구용 (2024. 8. 8). 여당서도 檢 통신조치,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0808/126401692/2>.
- 네이버 국어사전 (2024. 8. 30), 미디어,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9362d4b9fcbe487ab5eb95dcbbff9356>.
- 이현웅 (2024. 8. 14), 검찰 통신정보 조회건수 10년 새 급감…檢, 현 정부서 급증했다 볼 수 없어, <문화일보>,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81401039921312001>.
- 이혜리 (2024. 8. 26),尹 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 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MBC>,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0370_36438.html.
- 이희훈 (2024, 8월), <헌법재판소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388)>, 방송통신법 포럼 월례 발표회,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

헌재 2012. 12. 27. 선고 2010헌마153 결정.

헌재 2018. 8. 30. 선고 2016헌마483 결정.

헌재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2022헌마105·110·126(병합) 결정.

BVerfGE 130, 151.

■ ABSTRACT

Issue and Improvem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s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Request Regulations

Lee, Hie-Houn
Professor of Law and Police at SunMoon University

Recently, the issue of abuse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s been increasingly raised in Korea, and the number of requests by investigative agencies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has decreased considerably compared to approximately 10 years ago. However, these figures have increased slightly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s regulations for requesting information on communication users are believed to ensure the speed, trafficking,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stage, thereby effectively protecting public well-being. Therefore, the legislative purpose or the purpose of this law's regulations is justified. In additio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clearly stipulates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freely reject the request for providing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refore, this can reasonably be regarded as “an arbitrary investigation.” Unlike the regulations on requesting data to confirm communication facts under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which requires court

permission or warrant, Korea (like Germany) has separated the regulations on requesting information on communication us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rom Article 54 (3) of the latter Act, as Act No. 6230 of January 28, 2000. It does not require court permission or warrant. Both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nd Germany judge this law as constitutional. Therefore, amend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law in the future to receive new court permission or warrants is not necessary. Conversely, the regulations for requesting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ose a problem in that they can be abused by investigative agencies because the subject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rather broad. Additionally, the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Provision Request Regulations of the aforementioned Act allow the collec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detailed addresses that contain various importan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user within the scope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minimum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in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the communication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y be violated. Therefore, i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is desirable so that investigative agencies can request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to the minimum or appropriate extent.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communication us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desirable by improving the regulation to provide only the "name, date of birth, simple address (about the name of the city or neighborhood), phone number, ID, subscription, or termination date" of the communication user.

Keywords: Communication User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bitrary Investigation, Court's Permission or Warran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Detailed Addres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논문투고일 2024. 10. 28. 논문수정일 2024. 11. 24. 게재확정일 2024. 12. 2.]